

- 교통신호등 위치이동 및 교통섬 철거청원에 대한 -

의견서

1. 형곡2동 사무소앞 4거리 교차로의 교통섬이 도로의 구조·시설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설치한 비교적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확보한 시설물이라고는 하나, 시설의 미비 및 교통섬 주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해친다 함은 잘못된 행정의 소산물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여 본 청원을 교통시설물 관리주체인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할 것을 의결하였다.

다 음

- 교통섬이 보행자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고 교통사고의 요인이 된다 함은, 시설물의 개선 내지는 철거가 바람직할 것이며,
- 또한, 교통섬 주변도로의 불법주차와 중앙시장 상가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 등의 위법행위가 형곡 중앙시장 주변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면, 당연히 불법주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중앙시장 부설주차장의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.
-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내 형곡2동사무소 앞 4거리 교통섬 주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하고, 반사경 등 보조신호기와 안전 표지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,
- 교통섬 주변의 교통체계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과 청원인의 의견을 수렴, 제반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.

2000. 11. 24.

구미시의회 의원일동